

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안내



사업목적

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

<p>축산분야 스마트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환경관리 : 축사 내·외부(온·습도 등),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▶ 사양관리 : 자동급이기, 음수관리기, 유성분측정기 등 제어 통한 사양관리 ▶ 경영관리 : 생산관리, 경영관리,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·분석
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사업대상

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낙농, 한우 분야 농업경영체

- ▶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, 신·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
- 낙농·한우(50두)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30두 이상),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'축산업 허가 등록기준'의 가축사육 시설 면적 참고



지원자격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
- ▶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
- ▶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



지원대상 장비

낙농, 한우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
- ▶ 외부환경(온도, 습도, CO², 풍속, 풍향, 악취 등) 및 내부환경(온도, 습도, 정전, 화재, 악취 등)의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
- ▶ 자동포유기, 체중측정기, 발정탐지기, 유량/유성분측정기, 자동착유기(로봇포함), 자동급이기, 음수관리기, 사료빈관리기, 개체관리기, TMR배합기
- ▶ 축사의 모니터링, 분석, 제어 및 생산·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
-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,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



지원비율

국고보조 30%, 국고융자 50%, 자부담 20%

- ▶ 융자금리 : 2% (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-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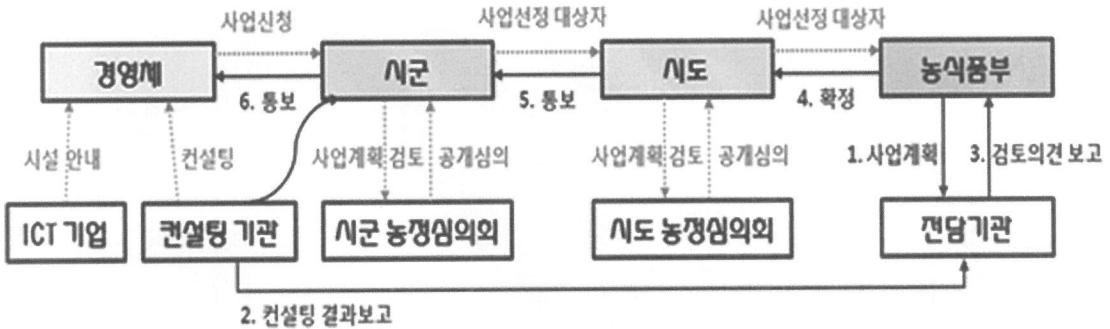
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▶ 표준사업비 : 100백만원(낙농, 한우 상한액 기준 1,000백만원)
- 낙농 · 한우(50두) 100백만원을 기준으로,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
- 컨설팅 결과,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,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, 정전/화재감시, 모돈 발정체크기, 부화기, 착유기(자동/로봇) 등은 추가 반영 가능
-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(100%)로 계획 수립 후, 대상농가에 지원



사업추진 절차

▶ 사업 신청단계



▶ 사업자 선정단계

